

---

2026년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4차공모

---

2026. 3. 18.



농촌진흥청

## 2026년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4차공모

농촌진흥청에서는 국가전략 산업으로의 농업 육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의 현안 해결과 지역발전 균형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을 연구·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청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기후 위기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6년도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1개 사업에 대하여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8일

농촌진흥청장

# || 목 차 ||

<b>I. 신규 공모 개요</b> .....	<b>1</b>
1. 사업개요 .....	1
2. 과제공모 방식 및 유형 .....	2
3. 추진일정 .....	2
<b>II. 신청요건 및 방법</b> .....	<b>5</b>
1. 신청요건 .....	5
2. 신청방법 .....	10
<b>III.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b> .....	<b>16</b>
1. 평가절차 .....	16
2. 평가방법 및 기준 .....	17
<b>IV. 기타 유의사항</b> .....	<b>20</b>
<b>V. 문의처</b> .....	<b>22</b>

# I 신규 공모 개요

## 1. 사업개요

- 공고규모 : 1개사업(1과제) 연구개발비 490백만원 이내
- 지원규모 및 기간 : 상세 정보는 과제제안요구서(RFP)에서 확인
  - \* 1차년도 연구기간은 2026.4.27.~2026.12.31.이며 협약 시 조정될 수 있음

### ◆ 신농업 기후변화 대응체계구축

(단위 : 백만 원)

내역 사업	지원유형	지원규모(이내)		연구기간
		과제 수	'26년 연구비	
기후적응형 농축산 재배사양기술 개발	지정공모	1	250	'26~'27
합 계		1	250	'26~'27

- 과제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된 과제명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과제별 연구개발비는 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방향에 맞춰 구체화 및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별 예산 배분
  - \* 단, 정부지원연구개발비/시험연구비 간 조정은 불가능

### 【 과제제안요구서(RFP) 확인 방법 】

▲ IRIS R&D업무포털 접속 → ▲ 로그인 → ▲ 사업기획·공고 → ▲ 사업공고 → ▲ 소관부처(농촌진흥청) 또는 전문기관(농촌진흥청) 선택 후 '검색' 클릭 → ▲ 대상 공고명 선택 → ▲ '기획과제' 선택 → ▲ 해당 사업명 선택 → ▲ 기획과제 정보에서 기획과제명의 '돋보기()' 선택하여 확인하거나 '첨부파일' 다운로드 클릭 → ▲ RFP 확인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개발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내역사업별로 단계(평가)가 적용될 수 있음
-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명시된 연구개발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며 평가에도 배제됨

## 2. 과제공모 방식 및 유형

### 연구과제 공모방식

- 사업의 목적이나 특성에 따라 공모방식을 달리할 수 있음
  - 지정공모 : 제목, 목표, 성과목표, 연구개발내용, 활용계획, 지원조건, 예산, 기간 등 모든 사항을 지정하는 사업목적 중심의 과제유형
  - 자유공모 : 제목, 지원조건, 예산, 기간만을 지정하고 다른 사항들은 연구자의 창의적인 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과제유형

### 연구과제 유형

- 사업의 목적이나 특성에 따라 연구과제 유형을 지정하여 과제 유형에 따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운영
  - 창의도전형 : 과정존중 유형, 연구자 역량과 창의·도전성 중심 선정평가, 정성평가 중심 최종평가
  - 성과창출형 : 성과중심 유형, 목표달성·성과창출 가능성 중심 선정평가, 목표달성도 중심 최종평가
  - 사회문제해결형 : 문제해결 유형, 연구계획 타당성과 결과의 활용가능성 중심 선정평가, 사회적 파급효과 중심 최종평가
  - 법정임무형 : 임무수행 유형, 연구계획 타당성과 임무수행 역량 중심 선정평가, 계획대비 추진실적 중심 최종평가

## 3. 추진일정

공고기간 : 2026. 3. 18.(수) ~ 2026. 3. 31.(화), 14일 간

접수기간 : 2026. 3. 18.(수) ~ 2026. 3. 31.(화) 18:00까지

- ▶ 신청 마감일 마감시간(18:00까지) 엄수(마감시간 이후 연장 불가)
- ▶ 신청 마감일 마감시간(18:00까지)까지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 하였어도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접수'되지 않음

□ 제출서류 사전검토 : ~ 2026. 4. 3.(금)

▶ 선정평가 관련 농촌진흥청 안내사항은 IRIS R&D업무포털 '전자알림'과 IRIS에 등록된 핸드폰 SMS, 이메일로 발송되므로 사전에 IRIS 등록된 핸드폰 번호 및 이메일 주소 확인 바람

**【 전자알림 확인 방법 】**

▲ IRIS 접속 → ▲ 로그인 → ▲ R&D업무포털 → ▲ WORK LOUNGE(워크라운지) → ▲ '전자알림 수신 목록'

□ 1차 서면평가 : 2026. 4. 7.(화) ~ 4. 8.(수), IRIS 평가시스템

\* 응모책임자는 4. 10.(금) 이후, IRIS에서 평가결과 확인 가능

**【 평가결과 확인 방법 】**

▲ IRIS 접속 → ▲ 로그인 → ▲ R&D업무포털 → ▲ 과제평가 → ▲ 평가위원회 → ▲ 평가결과 단건조회 → ▲ 정부부처·전문기관(농촌진흥청) 선택 → ▲ 사업년도 2026년 설정 → ▲ 평가구분 '선정평가' 선택 → ▲ 응모 당시 '과제번호' 기입 → ▲ 검색 → ▲ 하단 과제기본정보 확인

□ 2차 발표평가 : 2026. 4. 16.(목)

▶ 발표평가 '발표자료'는 **4월 14일 18:00까지 IRIS 등록(이후 등록 차단)**  
▶ ▲ IRIS 접속 → ▲ 로그인 → ▲ R&D업무포털 → ▲ 과제평가 → ▲ 평가위원회 → ▲ 평가자료 사전제출 → ▲ 입력할 과제정보 선택 → ▲ 파일목록 → ▲ 파일 업로드

\* 응모책임자는 발표평가에 반드시 참여하여 발표를 해야함

\*\* 발표평가 일정 및 장소는 IRIS R&D업무포털 '전자알림'과 IRIS에 등록된 핸드폰 SMS, 이메일로 발송됨

□ 선정평가 결과 공고 : 2026. 4. 20.(월), IRIS R&D업무포털

\* 선정평가 결과 확정통보 시 IRIS R&D업무포털 '전자알림'과 IRIS에 등록된 핸드폰 SMS, 이메일로 발송됨

**【 평가결과 확인 방법 】**

▲ IRIS 접속 → ▲ 로그인 → ▲ R&D업무포털 → ▲ 과제평가 → ▲ 평가위원회 →  
▲ 평가결과 단건조회 → ▲ 정부부처·전문기관(농촌진흥청) 선택 → ▲ 사업년도  
2026년 설정 → ▲ 평가구분 '선정평가' 선택 → ▲ 응모 당시 '과제번호' 기입  
→ ▲ 검색 → ▲ 하단 과제기본정보 확인

과제협의회 : 2026. 4. 24.(금)

\* 과제협의회에는 내외부 선정기관 주관/공동 책임자가 필수로 참석해야함

전자협약 : 2026. 4. 27.(월) 기준

## II

## 신청요건 및 방법

### 1. 신청요건

#### 1)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연구를 수행하려는 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함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제3호 또는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 < 연구개발기관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상세 지원대상은 과제제안요구서(RFP)에서 기재된 사항 확인

\*\* 해당 사업의 RFP상에서 지원자격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RFP에서 정한 지원자격을 우선적으로 적용

\*\*\*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공동연구 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협약일<sup>§</sup> 이전에 관련 신고증을 구비해야 함

§ 협약일('26. 4. 27. 기준) 이후 발급된 신고증은 인정하지 않음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자격

-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 기관에 재직중인 연구 인력이어야 하며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제 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 요망

## 2) 신청 제한

□ 신청 제한 및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및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 받는 경우에는 신규과제를 신청할 수 없음
  - \* 과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을 포함.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제외) 및 신청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제외),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과제를 신청할 수 없음

### < 과제신청 제한 사유 >

가. 기업의 부도, 휴·폐업

나.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지원을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다.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지원을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라.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마.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제출서류 사전검토 마감일까지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기관 자체 가결산은 불가)

○ 아래의 경우는 지원(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라도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에 저촉됨이 확인된 경우 선정을 취소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3책 5공)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예외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참조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3책5공)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구분	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개발과제(기관)	연구책임자 (책)	참여연구자 (공)
공동연구개발과제(기관)	참여연구자 (공)	

- \* 신청시에는 3책5공을 넘지 않았으나 타 전문기관 등 복수의 과제 신청·선정으로 전자협약 체결일 당시 초과되는 경우, 협약이 불가능할 수 있음
- 과제협약 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응모할 수 없음
-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30퍼센트까지 계상 가능 (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에 연구책임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므로 응모책임자는 반드시 연구과제 신청 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등 사전요건을 검토하고 과제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함
- ▶ 응모책임자가 참여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 제외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까지 다음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출 불이행
  - 기술료 납부 불이행
  - 정산금 또는 환수금, 제재부가금 납부 불이행
- \* 과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의무불이행을 종료해야 함
- '26년도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작성에 참여한 외부위원(전문위원회)은 해당 과제에 응모할 수 없음
- 협약 후 6개월(총 출장일의 합) 이상 해외출장계획이 있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장기과건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국외)연구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등 응모 시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 경우에는 응모할 수 없음

- \*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정년퇴직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는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 명의의 ‘퇴직 이후 고용유지 협약서’를 제출해야 함
- 응모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에 의한 탈락인 경우 재공모되는 동일 과제에 한하여 응모를 할 수 없음

▶ 위에 기술된 사항을 위반한 것이 협약 후에라도 확인되면 협약 해약, 연구비 회수 및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3) 과제구성 요건

- 과제구성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하나인 1개 과제로 구성
  - ※ RFP의 연구개발내용이 내부/외부로 구분된 “내외부 과제”인 경우 선정평가는 내부/외부를 구분하여 별도로 추진되며, 선정결과 통보 이후 과제협의회를 통해 1개의 과제로 통합하여 운영
- 연구개발기관의 유형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 주관연구개발기관만 하위에 위탁연구개발과제를 구성할 수 있음
    - ※ 협약체결은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하나의 과제에서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은 동일한 기관이 수행할 수 없음
- 보안등급 : 본 공모 과제는 일반등급 과제임

## 2. 신청방법

### 1) 과제 접수기관

접수기관	접수처
농촌진흥청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접속하여 온라인 입력사항 작성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 필요 서류 업로드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확인·승인하여 제출

※ IRIS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 인편 접수는 불가능

#### 【신청 절차】

▲IRIS R&D 업무포털 접속 → ▲로그인 → ▲사업 기획·공고 → ▲사업공고 → ▲소관부처(농촌진흥청) 또는 전문기관(농촌진흥청) 선택 후 ‘검색’ 클릭 → ▲대상 공고명 선택 → ▲‘공모분야’ 선택 → ▲응모희망 과제의 ‘접수’ 버튼 클릭 → ▲신청 내용 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 ▲최종확인 후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담당자 ‘승인’ 후 최종제출

- 주관/공동/위탁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접수 기간 내 IRIS에서 회원가입 후 연구자 전환을 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기관 정보 등록 및 ‘기관총괄담당자’ 지정 필수

※ 연구자 전환, 연구개발기관 등록 및 기관총괄담당자 지정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마감 2~3일 전 지정 완료 권장

### 2) 유의사항

- 신청마감일 18:00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

- ▶ ‘최종제출’이 된 이후에도 접수마감 시간까지는 연구개발계획서 수정이 가능하지만 수정 후에는 기관담당자 승인까지 접수마감 시간 전에 완료되어야 함
- ▶ 신청 기한 내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실패 시 신청서류 접수 불인정
- ▶ 신청 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 전 접수 완료를 권장

### 3) 제출서류 ※ 서식 준수

○ 연구개발계획서 : 관련 서식 모음(별첨서류 포함)

- 공모 과제별로 제시된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부합하도록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

※ 연구계획서 PART 2(연구개발 필요성, 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는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첨부

제출서류	대상자	비고
연구개발계획서	- 주관책임자(응모자) * PART 1, 3는 IRIS 온라인 입력 * PART 2는 작성 후 첨부	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주관책임자(응모자) 및 공동연구기관 책임자 * 팝업창 입력 * 주관책임자는 ‘사전 체크리스트’도 작성	필수 (온라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차별성 검토 대상(유사과제) 검색결과	- 주관책임자(응모자)	필수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 주관책임자(응모자) * 응모과제단위로 작성하여 연구기관탭에 첨부 * 가점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포함 제출	해당시 필수
연구 데이터관리계획서	- DMP 대상과제의 주관책임자(응모자) * DMP대상여부는 RFP에 명기	필수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영리기관 중 연구실운영비를 계상하는 연구기관 * 응모 시 제출하지 않은 연구기관은 협약 시 연구실 운영비를 계상할 수 없음	해당시 필수
연구 시설·장비 심의요청서	- 주관책임자(응모자) * 정부 R&D 예산으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고가 연구 시설·장비를 신규 구입·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시 필수

⇒ 첨부 서류의 작성 항목이 누락되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첨부하는 각 파일의 용량은 가능한 20MB를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하여 업로드하고 첨부된 모든 파일의 총용량은 150MB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요청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구수행기간 구성

- 연구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협약 시작일부터 당해연도 12월 말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연구비를 배정

- 2차년도 이후는 매년 1월 1일 시작, 12월 31일 종료를 원칙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연차별 연구기간을 감안해 연구내용 및 연구비를 조정하여 작성하고, 2026년도 1년차 연구기간은 '26.4.27.~'26.12.31.로 산정

○ 연구 시설·장비 심의요청서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 시설·장비를 신규 구입·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신청 시 관련 서류(관련 서식 모음 참고)를 제출해야 함

**【주의 사항】**

◆ 필요시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평가 전에 연구 시설·장비 심의회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선정평가 시 또는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 시설·장비 도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도입 여부 및 예산(비목)이 조정될 수 있음

※ 심의기준, 심의항목 등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관련 시설·장비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지침」 참조

※ 1억원 이상 투입하여 연구 시설·장비를 신규 구입·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선정된 후 과기정통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4) 접수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 18:00까지 기관담당자 승인을 거쳐 최종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에 한하여 접수

※ 접수매뉴얼 참조 (공고문 별도 첨부자료)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시 RFP의 최소 요구성과\*이상을 계획하여 IRIS 성과지표탭에 필수 입력

\* 내외부과제인 경우 RFP에 기재된 최소 요구성과는 내외부 과제가 함께 달성해야 할 성과이므로 필요시 과제 예산총액(정부지원연구개발비+시험연구비)대비로 목표 산출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에는 외부/내부과제에서 각각 달성할 목표만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내외부 합계가 RFP 최소 요구성과 미 충족시 과제협의회를 통해 조정해야 함

\*\*\* 성능목표를 요구하는 RFP의 경우, 목표치 설정 근거와 목표달성 증빙이 가능하도록 연구개발계획서에 평가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시

**< 연구개발기관별 연구성과 산출 방법(예시) >**

- ▶ RFP에 표준영향력지수(SCI)가 200점, 표준영향력지수(비SCI) 100점으로 기재되어 있고 연구개발비는 총액 600백만원(정부지원연구비 400, 시험연구비 200)으로 구성된 과제
- ▶ 산출방법: SCI 200/6=33.33점(100백만원 당), 비SCI 100/6=16.6점(100백만원 당)
- ▶ 외부과제(연구개발비 400백만원) : SCI 133.32점 이상, 비SCI 66.4점 이상 기재
- ▶ 내부과제(시험연구비 200백만원) : SCI 66.66점 이상, 비SCI 33.2점 이상 기재

## 5) 연구개발비 산정

### □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로 구성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 연구개발비(현금+현물)를 부담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협약이 지연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별표1]

구 분	연구개발비 비율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영리기관	100% 이하	-	-
중소기업	75% 이하	25% 이상	10% 이상
중견기업	70% 이하	30% 이상	13% 이상
공기업, 대기업	50% 이하	50% 이상	15% 이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및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비를 산정해야 하며, 연구기관별로 계상하여 관리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산정 관련하여 RFP 및 관련 규정 지침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회 또는 과제협의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IRIS 접속 → ▲로그인 → ▲사업정보 → ▲사업관련 서식·자료 → ▲전문기관(농촌진흥청) 선택 후 '검색' 클릭 → ▲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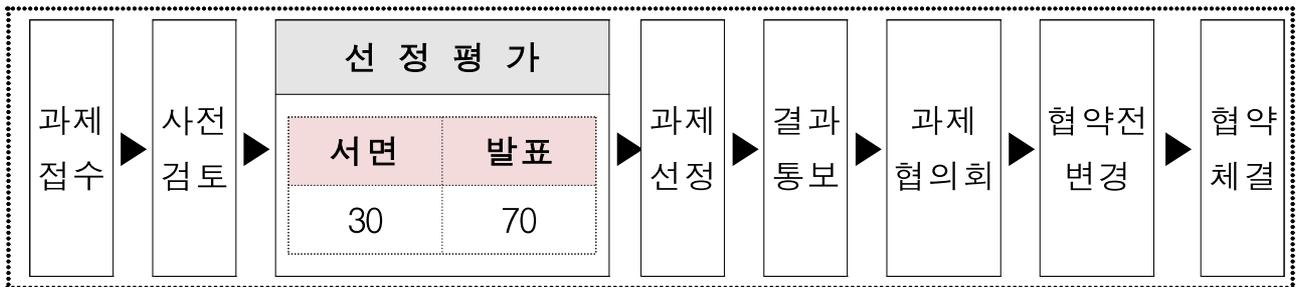
-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총 연구비 내에 포함되어야 함
  -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에 해당하는 기관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할 수 있음(최대 ~3%)
-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된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은 선정 평가 항목에 포함되며, 연구자 요청에 의한 단순변경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작성 필요

- 위탁정산수수료(주관연구개발기관만 계상)
  - 위탁회계법인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 연구활동비 내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에 산정
    -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인 경우 위탁정산수수료는 공동 연구개발기관별로 분담하여 계상
-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한 경우 (사용기준 제65조제4항 관련)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
    - ※ 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만 해당
  -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
    - ※ 연구과제 공모 시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별도 표시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전문연구 사업자가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수행하는 경우
    - ※ 협약 기준일(26. 4. 27.) 이전에 관련 신고증(신고업종 : 주문연구, 연구관리)을 구비한 경우에만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함
  - 지식서비스 분야 개발 내용을 포함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
    - ※ 지식서비스 분야란 기술분야가 산업기술분류표(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 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1]) 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로 연구과제 공모 시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별도 표시

### Ⅲ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 1. 평가 절차

##### □ 선정 절차



-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1조 제3항에 따라 농림식품 기술기획평가원(IPET)에서 3차공모 과제접수 및 선정평가를 대행함
-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연구비 및 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 과제선정 이후 내역사업별 단계(평가) 구분이 설정될 수 있음
- ※ 연구 시설·장비 신규 구입·구축을 요구할 경우 발표평가 시 심의회를 동시에 실시함

##### □ 선정 기준

-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도,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추진체계,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0조(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선정) 및 매뉴얼
- 선정평가 결과,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차순위 연구개발기관\*을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정할 수 있음

\* 과제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제외

## 2. 평가 방법 및 기준

□ 2단계 평가 : 1차 서면평가 (30%), 2차 발표평가 (70%)

<단계>	<방법>	<담당>
사전검토	신청자격의 적합 여부 검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IPET)
↓	* 사전검토 결과, 신청기준 미준수 행위 등 부적격자는 평가에서 제외	
1차 평가	서면평가(IRIS)	과제선정평가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 규칙을 위반하는 부정행위 시 탈락</li> <li>* 순위와 상관없이 60점 미만인 경우와 평가위원의 50%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채점한 경우는 탈락(1차 서면평가점수 기준)</li> <li>* 발표평가 대상 과제 : 2과제(경쟁률 4 이하), 3과제(경쟁률 5 이상)</li> </ul>	
2차 평가	발표평가(비공개) (1차 평가로 선발된 과제)	과제선정평가위원회 (1차 평가위원과 동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 기준을 위반하는 부정행위 시 탈락</li> <li>*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신규 연구시설·장비 구입·구축이 필요한 경우 발표평가에 병합하여 심의회 추진</li> <li>* 순위와 상관없이 60점 미만인 경우와 평가위원의 50%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채점한 경우는 탈락(2차 발표평가 점수 기준)</li> <li>* 1차 평가 점수(30%)와 2차 평가 점수(70%)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 산출하고 가·감점이 있으면 적용</li> </ul>	
<b>과제 확정</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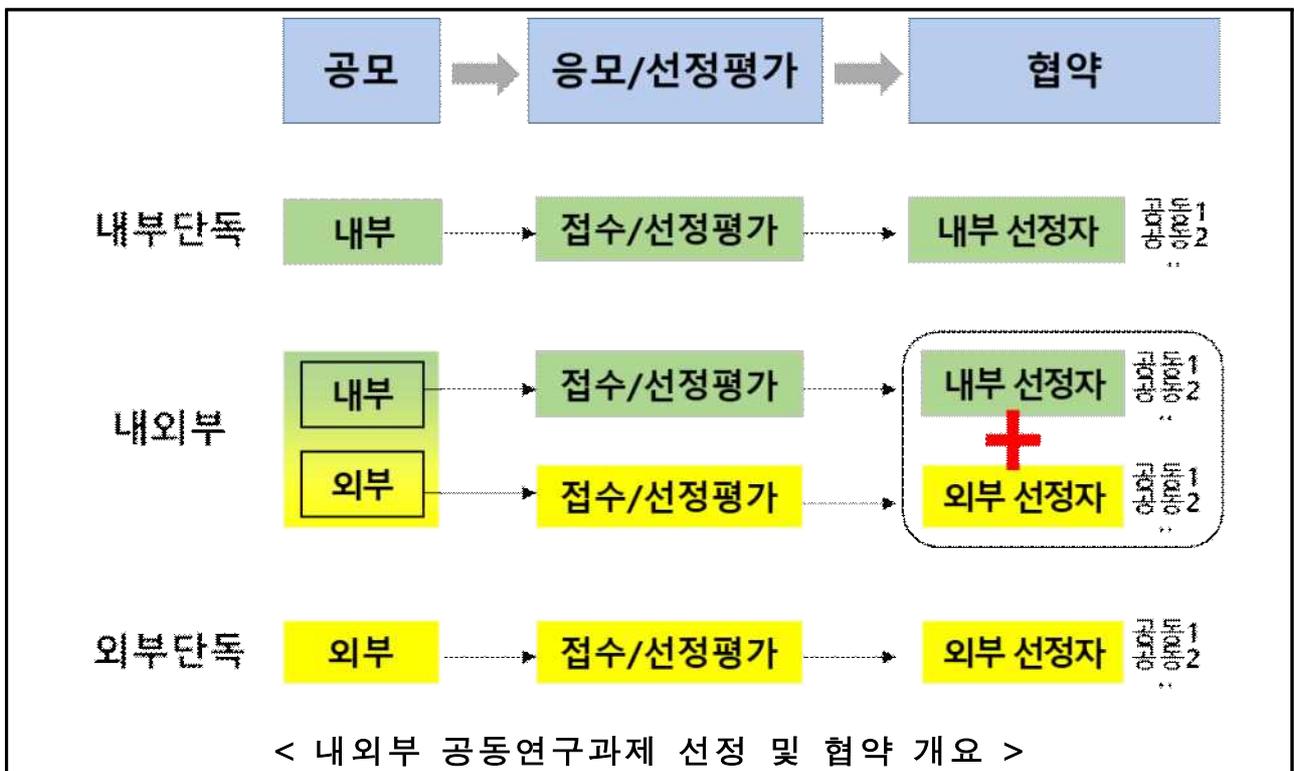
- 내·외부 공모과제의 경우 내부와 외부 제안과제를 분리하여 평가·선정을 진행하고 과제협의회를 통해 하나의 주관과제로 결합

◇ 내부공모 과제와 외부공모 과제를 별도 추진

- 내부공모 과제 :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 연구책임자만 대상
- 외부공모 과제 : 외부 연구책임자만 대상

※ 내·외부 개별 최종 선정 후 결합하여 과제 구성

◇ 단, 내부나 외부 중 어느 한 과제가 응모하지 않은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내부나 외부 중 어느 한 과제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내·외부 과제 융합을 통한 주관과제 구성이 불가하여 최종선정 대상에서 제외



□ 과제확정 시 우선순위 결정 기준

- 취득점수는 평가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계산함(Head-Tail Cut 적용)
-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발표평가 점수를 우선으로 함
-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라도 평가위원의 50%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채점한 경우는 탈락
- 타 전문기관에 과제가 선정되어 3책5공이 초과된 경우, 전자협약이 불가능하므로 과제수행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함
- 선정평가 결과,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 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차순위 연구개발기관\*을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정할 수 있음

\* 과제선정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제외

## IV

## 기타 유의사항

- 가. 응모 시 제출된 자료는 평가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음
- 나. 과제 응모 시 응모/선정과제명은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동일하게 작성해야 하며,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다를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다.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차별성 검토 자료 등 필수 제출서류는 응모책임자가 사전에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IRIS에 온라인 동의 또는 자료를 등록해야 하며, 미첨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라. 가점이 있는 응모책임자는 ①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관련 서식 참고)와 ②가점 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과제 신청 시 IRIS 연구기관탭 ‘우대 및 감점 확인서’ 항목에 사전에 모두 제출한 경우에만 평가 점수에 반영함(응모책임자만 해당)
- 마. 발표평가 시 사업담당부서와의 사전협의 없이 응모책임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는 경우 탈락 처리함
- 바. 내·외부 사전협의 등 내·외부가 서로 공모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신청 또는 발표하는 경우 탈락 처리함
- 사.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발표평가 시간 및 장소 미공지 등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명백한 행정오류에 대해서만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단, 평가 위원 선정,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아. 농촌진흥청은 신규과제로 선정된 모든 과제에 대해 다년차 협약을 실시하며, 혁신법에 따른 양식 및 관련 절차에 따라 협약 추진

자. 특수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연구 참여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부득이한 참여가 필요한 경우 협약시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검토 결과가 미비한 경우 해당 특수관계자는 연구에 참여할 수 없음

\* 단, 응모 시 IRIS 연구기관탐의 직계존·비속에 체크하여 접수하여야 함

◆ 주의사항

- 총연구비(총연구기간)은 예산상황에 따라 증액(증가)또는 감액(감소) 될 수 있음
- 내역사업별로 단계(평가)가 설정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두 개 이상의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 ※ 1개 과제 내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별 책임자는 1명
- 혁신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과제선정 이후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과제수행(협약)을 포기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관련 규정

- 「농촌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매뉴얼」 등

## V

## 문의처

### □ 문의처

문의 내용	담당 부서	연락처
▪ IRIS 접수단계 오류해결 및 시스템 관련 문의사항 등	범부처통합 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042-862-1500
▪ 응모과제(RFP) 내용 관련	사업담당부서 (RFP에 표기된 담당부서)	063-238-0653
▪ 공고문, 접수 및 선정평가 관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과학기술TF	061-338- 9783, 9784
▪ 농업R&D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연구관리과 사업관리팀	063-238- 0811, 0813

**【붙임 1】 2026년도 신규과제 4차공모 과제 목록**

**【붙임 2】 연구개발과제 선정 평가 기준**

**【붙임 3】 연구과제 선정시 가감점 기준**

**붙임 1**

**2026년 4차공모 대상 신규과제 목록**

번호	세부사업명 (내역사업)	공모과제명	공모 구분	26년 연구비 (백만원)			시작 년도	종료 년도	연구비 총액
				출연금	시험 연구비	계			
1	신농업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소계	내외부 1	150	100	250	2026	2027	490
	(기후적응형 농축산 재배사양기술 개발)	신간척지 규모화 스마트농업 재배기 준 설정 및 현장 실증	내외부	150	100	250	2026	2027	490
<b>총계</b>		<b>1과제</b>	내외부 1	150	100	250	2026	2027	490

신규과제 선정 평가서(성과창출형)

평가항목	평가 주안점	배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연구계획 (30)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성	5	4	3	2	1
	연구목표의 명확성 및 달성 가능성	10	8	6	4	2
	최종/단계별/연차별 수행내용의 적절성	10	8	6	4	2
	연구개발비 규모 및 배분의 적절성 * 연구장비구입계획이 있는 경우, 타당성	5	4	3	2	1
창의성 및 효율성 (20)	핵심기술 도출의 창의성	10	8	6	4	2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효율성	10	8	6	4	2
연구역량 (20)	참여기관의 적합성 및 수행능력	10	8	6	4	2
	연구책임자 역량 및 참여연구원 구성의 적절성	10	8	6	4	2
결과활용 (30)	연구결과의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15	12	9	6	3
	연구결과의 실용/산업화 및 타분야의 기여도	15	12	9	6	3
합 계						

\* 과제 목적·성격 등 특성에 따라 평가 주안점 및 배점 변경 가능(필요시)

**종합 검토의견**

※ 각 평가항목별 25자 이상, 전체 100자 이상 작성

□ 목표달성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

(예시)

○ 연구방법

-

○ 성과 극대화를 위한 조언

평가자 성명 (서명)

**<비고> 연구과제 유형**

○ 사업의 목적이나 특성에 따라 연구과제 유형을 지정하여 과제유형에 따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운영(RFP에 명시된 연구과제 유형 확인)

\* 성과창출형 : 성과중심 유형, 목표달성·성과창출 가능성 중심 선정평가, 목표 달성도 중심 최종평가

# 붙임 3

#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가감점 기준

구 분	과제 선정시 가·감점			적용기산일 (기준일)
	가점	감점	적용 기간	
<b>&lt;가점 항목&gt;</b> * 접수마감일 기준 적용				
1.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과제 최종평가 결과 우수과제 이고, 상위 10%이내에 해당하는 연구과제의 책임자가 응모과제 책임자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5		3년	평가결과 통보일
2. 과학기술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거나,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연구자가 응모과제 책임자로 신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		3년	포상일
3.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주관책임자(기술료징수 총액이 2천만 원 이상 또는 유상기술이전 2건 이상)가 응모책임자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		3년	적용기간 내 최초 징수일 또는 계약일
4. 영리법인의 경우, 기술실시를 통한 정부납부기술료의 최근 2년간 누적 납부액(감면액 포함)이 200만원 이상인 연구성과소유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		2년	납부일
5. 농촌진흥청 보안과제를 수행한 주관책임자가 응모 책임자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		3년	연구개발협약종료일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		3년	인증일
7.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실적이 있는 연구기관이 관련 신기술로 신규 과제를 신청한 경우(단,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 기관인 경우에 한함) * 신기술인증 소관 법령 적용하여 조정 가능	3		2년	인증일
8.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연구자				별도의 문서로 시행
(예시) 농업기술대상 연구대상 (2025년 수상자)	1		3년	포상일
<b>&lt;감점 항목&gt;</b>				
1.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제1항 제3호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점	3년	제재처분일
2.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5점	3년	협약해약일 (또는 협약포기 시 협약예정일)

### <비고> 가·감점 적용 기준

- \* 가점(1번, 5번) 감점(2번) 항목에 대한 신규과제 선정 시 가·감점의 인정 범위는 농촌진흥청에서 평가받은 결과만 적용한다.
- \* 가점 부여 원칙 : 동시에 2개 이상의 과제를 신청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한 1개 과제만 적용되며 적용 기한 내 1회만 적용
- \* 감점 부여 원칙 : 동시에 2개 이상의 과제를 신청한 경우 전체 과제에 적용되며 적용 기한 내 전체과제에 부여
- \* 중복 시 적용 기준 : 가·감점별로 동시에 2개 이상의 부여 항목이 있는 경우 가점은 5점, 감점은 10점 이내에서 합산하여 적용

